

# 개호보험제도 개정의 포인트 <2018년도>

## 2018년 4월부터

### ● 개호의료원이 창설되었습니다

「일상적인 의학관리」와 「간병·터미널케어」 등의 기능 및 「생활시설」로서의 기능을 겸비한 새로운 개호보험시설로서 개호의료원이 창설되었습니다.

### ● 공생형 서비스가 창설되었습니다

개호보험과 장애복지제도에 새로운 공생형 서비스가 창설되었습니다. 이로써, 장애복지서비스의 이용자가 고령자가 되어도 계속해서 같은 사업소에서 개호보험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### ● 65세 이상인 분의 보험료 단계를 판정하는 기준이 일부 바뀌었습니다

보험료 단계를 판정하는 기준으로서, 합계소득금액에서 토지나 건물의 양도소득에 관련되는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.

아울러, 제 1 단계부터 제 5 단계까지 보험료 단계를 판정하는 기준으로서, 합계소득금액에서 연금수입에 관련되는 소득을 공제한 금액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.

## 2018년 8월부터

### ● 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는 분은 이용자 부담비율이 바뀝니다

이용자 부담비율이 20% 인 분 가운데 특히 소득이 높은 분이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의 이용자 부담비율은 30% 가 됩니다. 단, 월액 44,400 엔의 부담 상한이 있습니다.

## 2018년 10월부터

### ● 복지용구의 대여가격에 상한이 설정됩니다

상품별 전국 평균 대여가격의 공표와 대여가격의 상한 설정이 시행되어, 복지용구를 대여받을 때는 사업자로부터 전국 평균 대여가격과 그 사업자의 대여가격 등 쌍방의 설명을 듣게 됩니다. 또, 2018년 4월부터는 기능이나 가격대가 다른 여러 가지 상품을 제시받아 복지용구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